

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3. 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이 조례안 제10조 2항 4호는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구미사람 대상 수상자에 확대 지원하는 것은 감면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항목을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 및 수정, 추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0조 2항 4호 삭제 및 제19조의2 1항,2항 수정, 3항 추가

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 2항 4호를 “삭제”한다.

안 제19조의2 1항 전문을 “① 시장은 승조당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봉안 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한다.

안 제19조의2 2항 전문을 “② 제1항에 따른 봉안 구역 대상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한다.”로 수정한다.

안 제19조의2 3항 “③ 기존 승조당 안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등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”을 추가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0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(생략)	제10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조당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	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4. 「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」에 따른 수상자	<삭제>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제19조의2(유공자 등 봉안 구역) ① 시장은 승조당 내 국가와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봉안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봉안구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(단, 유족과 가족은 제외한다) 2.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수상자	제19조의2(유공자 등 봉안 구역) ① 시장은 승조당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봉안 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봉안 구역 대상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한다. ③ 기존 승조당 안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등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